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59호의3서식(전산용 1)] <개정 2024. 5. 28.> (앞쪽)

☜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우체국

바코드 18㎜

음성안내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주택 재산세

받는 사람

바코드 17㎜

우편반송용

납 부 장 소
은 행 방 문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가 상 계 좌
온 라 인

※상세안내 후면 참조

년 주택 기분 재산세

음성안내

바코드 18㎜

납부하실 금액 원

까지 납부 시

[기분]	①	산출세액	원
	②	경감세액	원
		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	원
		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	원
		법 또는 조례 감면	원
	③	납부할 세액(①-②)	원

시군구	재산세	수납은행 확인용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 번 호	

납기 내:	까지
세 목	납기 내 세액
합 계	

납기 후:	까지
납기 후 세액	

년 월 일

수납용 바코드

수납용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

시군구	년 (주택 기분) 재산세	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	납세고지서 겸 영수증

납세번호	기관		세목		연월기		과세번호	

납 세 자 주 소

납세자번호

과세대상

수납용

수납용 바코드

세 목		납기 내 금액	납기 후 금액	과세표준	납기 내	원
재산세	재산세(주택)				까지	
	도시지역분					
지역자원시설세					납기 후	원
지방교육세					까지	
합 계						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년 월 일

위 세액을 영수합니다.
년 월 일

전자납부 번호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

담당자 문의처
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(CP지 90g/㎡)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

구분	재산세(주택)
시가표준액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
(×)	(×)
공정시장 가액비율	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
(=)	(=)
과세표준	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[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액]
(×)	(×)
세율	

과세표준	표준세율	세율특례
6천만원 이하	0.1%	0.05%
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	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
3억원 초과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

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

(=)	(=)
산출세액	재산세(주택) 산출세액
(-)	(-)
감면	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
(-)	(-)
세부담상한 초과액	

공시가격	3억원 이하	6억원 이하	6억원 초과
상한율	105%	110%	130%

(=)	(=)
납부할 세액	재산세(주택) 납부할 세액

재산세 부과 안내

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
납세의무자	▪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납부지연 가산세	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**※ 계산식**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과세표준 상한제도	▪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산정되는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**※ 과세표준상한액**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+ (해당 연도 과세표준 ×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)
세부담 상한제도	▪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

구제신청 기한 안내

이의신청	▪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심판청구	▪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구분	과세표준	세율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
지역자원 시설세	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× 60%	

과세표준	세율
600만원 이하	0.04%
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
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
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
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

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59호의3서식(전산용 2)] <개정 2024. 5. 28.> (앞쪽)

☜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우체국

바코드 18mm

음성안내

과세번호			
담당자		문의처	

바코드 17mm

우편반송용

주택 재산세

받는 사람

자동납부 현황

금융회사(신용카드회사)
예금주(소유주)
계좌번호(신용카드번호)
성명(법인명)
자동이체(납부)일

※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.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.

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 통지서

귀하(귀 법인)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(신용카드)에서 해당 자동이체(납부)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주택 기분 재산세

음성안내 바코드 18mm

납부하실 금액 **원**

	① 산출세액	원
	② 경감세액	원
[기분]	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	원
	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	원
	법 또는 조례 감면	원
	자동이체 세액공제	원
	③ 납부할 세액(①-②)	원

귀하(귀 법인)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시군구	년 (주택 기분) 재산세	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	납세고지서

납세번호	기관		세목		연월기		과세번호	

납 세 자 주 소

납세자번호

과세대상

세 목		납부할 세액	과세표준	납기 기한
재산세	재산세(주택)			까지
	도시지역분			
지역자원시설세				담당자
지방교육세				문의처
합 계				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

※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(CP지 90g/㎡)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

구분	재산세(주택)
시가표준액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
(×)	(×)
공정시장 가액비율	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
(=)	(=)
과세표준	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[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액]
(×)	(×)
세율	

과세표준	표준세율	세율특례
6천만원 이하	0.1%	0.05%
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	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
3억원 초과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

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가감 가능

(=)	(=)
산출세액	재산세(주택) 산출세액
(-)	(-)
감면	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
(-)	(-)
세부담상한 초과액	

공시가격	3억원 이하	6억원 이하	6억원 초과
상한율	105%	110%	130%

(=)	(=)
납부할 세액	재산세(주택) 납부할 세액

재산세 부과 안내

과세근거	▪ 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
납세의무자	▪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납부지연 가산세	▪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
과세표준 상한제도	▪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산정되는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※ 과세표준상한액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+ (해당 연도 과세표준 ×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)
세부담 상한제도	▪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

구제신청 기한 안내

이의신청	▪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심판청구	▪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구분	과세표준	세율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
지역자원 시설세	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× 60%	

과세표준	세율
600만원 이하	0.04%
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
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
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
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
6,400만원 초과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